

의안번호	2213949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6. 1. 22.
추 계 번호	25D589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1조 제2항(휴직)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때에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	의무규정
2	안 제83조의2 제1항(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1호나 제3호1)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1조 제2항(휴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3조의2 제1항(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미대상 공무원 징계 사유 중 불법정보의 유통, 스톱킹 범죄에 대한 시효기간을 규정한 내용으로 재정을 수반하지 않음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생략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Ⅲ. 미첨부 사유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범위 확대 등(안 제71조제2항)

-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 －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이 질병휴직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한 불임·난임 휴직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재정을 수반하지 않음
-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1항²⁾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하한액이 70만원, 상한액이 250만원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임
 - －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또는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금액을 상향 규정하고 있음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③~⑤ (생략)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안은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현행과 같이 하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 이후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육아휴직자 수 및 월봉급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인사혁신처의 「2025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수는 총 35,122명으로, 이 중 여성공무원이 72.5%인 25,460명, 남성공무원이 27.5%인 9,662명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